

증치세법 보충 문건 해설 (一):

장기자산 매입세액공제 잠정방법

2026.02

Issue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¹(이하 “증치세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실시조례》²(이하 “증치세법 실시조례”) 제 25 조는 처음으로 “장기자산”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장기자산이란 일반납세인이 취득한 “고정자산,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말하며, 해당 자산들의 매입세액 처리는 특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장기자산 매입세액공제 잠정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³(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6년 제 15호, 이하 “15호 공고”)를 발표했으며, 일반납세인이 취득한 장기자산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처리에 대한 상세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Newsflash 에서는 15 호 공고의 주요 조항을 소개하며, 가정 사례를 통해 관련 조건의 적용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증치세법 실시조례 제 25 조에 따르면, 일반납세인이 취득한 장기자산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방법 적용 과세항목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5 대 공제불가 항목**(간이과세방법 적용 항목, 증치세 면제 항목, 공제불가 비과세 거래, 집단복지 또는 개인소비)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방법 적용 과세항목과 공제불가 항목(이하 "혼합 용도")에 **검용되는 경우**:
 - 원가가 500 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은 단일 장기자산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원가가 500 만 위안을 초과하는 단일 장기자산은 구입 시 **전액 공제하되**, 이후 혼합 사용 기간 동안 조정연한에 따라 **공제불가 금액을 계산하여 연도별로 조정**합니다.

15 호 공고는 장기자산 매입세액공제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一、장기자산의 정의

"취득한 장기자산"이란 직접 구매, 자체 생산·연구개발 또는 건설, 투자 수입, 기부 수령,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등 각종 방식으로 취득한 장기자산을 말합니다. 다만, 임차한 장기자산, 공사 현장에서 건설한 임시 건축물·구축물, 그리고 부동산 개발기업이 재고로 회계처리하는 자체 개발 부동산 프로젝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二、원가 500 만 위안을 초과하는 장기자산은 취득 시 혼합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전액 공제하되 이후 기간 동안 연도별로 조정

2.1 원가 500 만 위안을 초과하는 혼합 용도 장기자산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장기자산을 혼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입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되, 이후 혼합 사용 기간 동안 연도별로 조정해야 합니다:

(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회계제도상 관련 자산으로 계상하며, 원가가 500 만 위안을 초과하는 단일 장기자산.

(二) 2025 년 12 월 31 일 이전 이미 회계제도상 자산으로 계상되었고,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자본화 개조를 완료하여 개조 완료 후 원가가 500 만 위안을 초과하는 단일 장기자산.

장기자산의 원가란, 장기자산 취득 시의 장부 계상가액을 말합니다. 장기자산 형성 후 자본화 개조 지출이 발생한 경우, 회계제도에 따라 원가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2.2 연도별 “기간별(分期) 조정 방식”

(一) 당해연도 혼합 용도 기간의 매입세액 기간별 조정 기준액(基数) 산정

$$\begin{aligned} & \text{당해연도 혼합 용도 기간 매입세액 기간별 조정 기준액} \\ & = \text{조정 대상 장기자산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times \left(\frac{\text{당해연도 혼합 사용 개월 수}}{\text{조정연한} \times 12} \right) \end{aligned}$$

조정연한 규정 중, 부동산·토지사용권은 20 년, 항공기·열차·선박은 10 년, 기타 장기자산은 5 년입니다.

(二) 당해연도 혼합 용도 기간의 집단복지 또는 개인소비(이하 “2 대 공제불가항목”)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계산

$$\begin{aligned} & \text{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2대 공제불가항목 대응 매입세액} \\ & = \text{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매입세액 기간별 조정 기준액} \\ & \times \frac{\text{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중 회계제도에 따라 2대 공제불가항목에 계상된 장기자산 감가상각액·상각액}}{\text{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중 회계제도에 따라 계상된 장기자산 전체 감가상각액·상각액}} \end{aligned}$$

(三)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중 간이과세방법 적용 항목, 증치세 면세 항목, 공제불가 비과세 거래(이하 "3대 공제불가항목")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계산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3대 공제불가항목 대응 매입세액

=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매입세액 기간별 조정 기준액 -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2대 공제불가항목 대응 매입세액)

× $\frac{\text{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간이과세방법 과세 판매액} + \text{면세 판매액} + \text{공제불가 비과세 거래 수입액}}{\text{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전체 판매액} + \text{전체 비과세 거래 수입액}}$

(四)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중 5대 공제불가 항목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1월 증치세 납세 신고 기간 중 매입세액에서 차감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5대 공제불가항목 대응 매입세액 = 2대 공제불가항목 대응 매입세액 + 3대 공제불가항목 대응 매입세액

PwC의 관찰

원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혼합 용도 장기자산은 취득 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1월 납세 신고 기간내에 "기간별 조정 방식"에 따라 연도 조정을 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장기자산의 개념과 매입세액공제 잠정방법은 새로운 것이지만, 대상 기업들은 2027년 1월 납세신고 기간내에 최초의 연도 조정을 하면 됩니다. 기업은 2026년에 자료를 정리하고 영향을 받는 단일 장기자산을 식별하며, 장부를 정리하고 매입세액 및 비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시간이 있습니다.

三、 장기자산 사용 도중 용도 변경 발생 시 매입세액 처리

Case 1: 취득 시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한 장기자산이 이후 기간 동안 비정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5대 공제불가 항목에 전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전출이 필요함.

납세인이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비정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용 용도가 변경되어 5대 공제불가 항목에 전용되는 경우, 비정상 손실 발생 또는 용도 변경이 발생한 월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당기 매입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공제불가 매입세액 = 장기자산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 잔존가율(净值率)

잔존가율 = 당월 초 장기자산 순가치 ÷ 장기자산 원가 × 100%

Case 2: 취득 시 5 대 공제불가 항목에 전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했던 장기자산이 이후 기간 동안 일반과세방법 적용 과세항목에 전용되거나 혼합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납세인이 장기자산을 취득하여 5 대 공제불가 항목에 전용한 후, 사용 용도가 변경되어 일반과세방법 적용 과세항목에 전용되거나, 일반과세방법 적용 과세항목과 5 대 공제불가 항목에 혼합 사용되는 경우, 용도 변경이 발생한 월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공제가 가능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가 가능 매입세액 = 장기자산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 잔존가율

Case 1 과 Case 2 중, 500 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은 장기자산은 순가치가 회계제도상 감가상각/상각 후 잔액에 따라 결정합니다. 500 만 위안을 초과하는 장기자산은 순가치를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text{장기자산 순가치} = \text{장기자산 원가} \times \left(1 - \frac{\text{이미 취득한 장기자산 개월 수}}{\text{조정연한} \times 12} \right)$$

PwC의 관찰

Case 2 에서, 해당 장기자산이 500 만 위안을 초과하고 혼합 용도로 전환된 경우라면, 용도 변경 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더라도 상술한 부분 2에 따라 이후 기간의 연도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자산의 "원가"가 500 만 위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장기자산 최초 취득 시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장기자산이 혼합 용도로 전환될 때의 순가치가 500 만 위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지 향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四、장기자산 자본화 개조

장기자산의 자본화 개조란, 회계제도상 자본화 요건에 부합하는 수리, 업그레이드, 개조, 개건, 증설, 수선, 장식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자산 형성 후 자본화 개조 지출이 발생한 경우, 회계제도에 따라 원가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자본화 개조 지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에 따라 장기자산의 매입세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미 회계제도상 자산으로 계상되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본화 개조를 완료하여 개조 완료 후 원가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단일 장기자산은 혼합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혼합용도기간 매입세액을 처리할 때 다음 2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 자본화 개조 지출 부분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상기 부분 2의 기간별 조정방식을 참조하여 공제불가항목의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연도별로 조정해야 합니다.
- 자본화 개조 지출 이외의 부분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a) 혼합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으며, b) 이후 기간 동안 용도가 변경되면 상기 부분 3의 2가지 경우를 참조하여 매입세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PwC의 관찰

“자본화 개조 지출 이외의 부분에 대응하는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15호 공고에서는 “이외의 부분”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 향후 세무총국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五、장기자산의 처분

납세인이 단일 장기자산 전체를 처분하는 경우, 상기 부분 3의 용도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장기자산의 매입세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납세인이 단일 장기자산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 처분 시점에 회계제도에 따라 확인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처분 부분과 잔존 부분의 비율을 산정한 후, 처분 부분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六、가정 사례 분석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PwC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가정 사례를 통해 15호 공고에 규정된 장기자산 매입세액공제 잠정방법 주요 조항의 적용과 이에 따른 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가정 사례 1: 갑 기업은 2026년 1월 생산라인 설비 A를 원가 300만 위안(세금 제외, 매입세액 39만 위안)으로 구입하여 당월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2월 회계상 감가상각을 시작하며, 감가상각 기간은 5년)

일반과세방법 적용 과세항목에 전용하였습니다. 2027년 2월 전체 설비는 비정상 손실이 발생하여 폐기되었습니다.

증치세 처리 분석:

- 2026년 1월 설비를 구입했을 때 일반과세방법 적용 과세항목에 전용했기 때문에 매입세액 39만 위안은 전액 공제되었습니다.
- 2027년 2월 폐기 당월 공제불가항목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당기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2027년 2월 초 장기자산 순가치(회계제도상 감가상각 후 잔액 기준) = $300 - 300 \times 12 / (12 \times 5) = 240$ 만 위안

잔존가율 = 당월 초 장기자산 순가치 ÷ 장기자산 원가 × 100% = $240 / 300 \times 100\% = 80\%$

공제불가항목 매입세액 = 장기자산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 잔존가율 = $39 \times 80\% = 31.2$ 만 위안

가정 사례 2: 을 기업은 2026년 2월 생산라인 설비 B를 원가 400만 위안(세금 제외, 매입세액 52만 위안)으로 구입하여 당월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5대 공제불가항목(3월 회계상 감가상각을 시작하며, 감가상각 기간은 5년)에 전용하였습니다. 2027년 3월부터 전체 설비는 용도를 변경하여 일반과세방법 적용 과세항목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증치세 처리 분석:

- 2026년 2월 설비를 구입했을 때 5대 공제불가항목에 전용했기 때문에 매입세액 52만 위안은 전액 공제 불가하여 회계상 설비 원가에 계상되었으므로, 회계상 원가는 452만 위안입니다.
- 2027년 3월 용도가 변경되어 일반과세방법 적용 과세항목에 전용하게 되었으므로, 용도 변경 당월에 공제가능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2027년 3월 초 장기자산 순가치(회계제도상 감가상각 후 잔액 기준) = $452 - 452 \times 12 / (12 \times 5) = 361.61$ 만 위안

잔존가율 = 당월 초 장기자산 순가치 ÷ 장기자산 원가 × 100% = $361.61 / 452 \times 100\% = 80\%$

공제가능 매입세액 = 장기자산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 잔존가율 = $52 \times 80\% = 41.6$ 만 위안

가정 사례 3: 병 기업은 2026년 3월 생산라인 설비 C를 원가 600만 위안(세금 제외, 매입세액 78만 위안)으로 구입하여 당월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4월 회계상 감가상각을 시작하며, 감가상각 기간은 5년), 혼합 용도로 일반과세방법 적용 과세항목(2026년 혼합용도기간 판매액 1,000만 위안), 종업원 복지(해당 설비의 20%를 종업원 복지에 사용)과 증치세 면제항목(2026년 혼합용도기간 판매액 400만 위안)에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기타 증치세 관련 업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증치세 처리 분석:

- 2026년 3월 설비를 구입했을 때 원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고 혼합 용도에 사용했으므로, 매입세액 78만 위안은 전액 공제되었습니다.
- 2027년 1월 연도별로 조정하여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별 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Step 1:

2026년 혼합 용도 기간(2026년 4월-12월) 매입세액 기간별 조정 기준액

= 조정 대상 장기자산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 (당해연도 혼합 사용 개월 수 / (조정연한 × 12))

= $78 \times 9 / (5 \times 12) = 11.7$ 만 위안

Step 2:

2026 년 혼합용도기간 중 2 대 공제불가항목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매입세액 기간별 조정 기준액 ×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중 회계제도에 따라
2 대 공제불가항목에 계상된 장기자산 감가상각액·상각액 ÷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중 회계제도에 따라
계상된 장기자산 전체 감가상각액·상각액

= 11.7 x 20% = 2.34 만 위안

Step 3:

2026 년 혼합용도기간 중 3 대 공제불가항목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매입세액 기간별 조정 기준액 -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2 대 공제불가항목
대응 매입세액) ×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간이과세방법 과세 판매액 + 면세 판매액 + 공제불가 비과세
거래 수입액) ÷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전체 판매액 + 전체 비과세 거래 수입액)

= (11.7 - 2.34) x 400 / (1000 + 400) = 2.67 만 위안

Step 4:

2026 년 혼합용도기간 중 5 대 공제불가항목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2 대 공제불가항목 대응 매입세액 + 당해연도 혼합용도기간 3 대 공제불가항목
대응 매입세액

= 2.34 + 2.67 = 5.01 만 위안(해당 금액은 2027 년 1 월 납세신고 기간 내에 매입세액에서 차감)

PwC의 관찰

상기 가정 사례는 15 호 공고에 대한 초기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다수의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세무총국의 추가적인 명확화가 필요하며, 15 호 공고의 최종 해석 및 시행 기준은 향후 세무총국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가정 사례의 배경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실무에서는 각종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산 과정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장기자산”이라는 개념의 도입은 기업의 재세 업무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15 호 공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업의 장기자산 일상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증치세 공제 증빙의 기록·보관, 장기자산 매입세액공제 대장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은 장기자산의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 자산 사용 현황을 추적하고, 통일된 데이터 산출 로직을 설계하고 증치세 관리대장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 시 세무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여 규정 준수는 물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증치세 관리를 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규 법규 체계하에 많은 후속·보완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wC 는 증치세 현황을 지켜보고 우리의 관찰을 공유해 드리며 증치세 신규 법규에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주석

1.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12/content_6994557.htm

《증치세법》에 관한 해설은 PwC 뉴스플래시 2024 년 Issue 19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4q4/chinatax-news-dec2024-19.pdf>

2.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실시조례》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512/content_7053149.htm

《증치세법 실시조례》에 관한 해설은 PwC 뉴스플래시 2025 년 Issue 16 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5q4/chinatax-news-dec2025-16.pdf>

3. 재정부, 세무총국의 《장기자산 매입세액공제 잠정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47500/content.html>

CONTACT LIST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Newsflash(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新知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法规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6 年 2 月 5 日编制而成的。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2026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